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V
(전화 796 - 8364)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종배

주소 : 광주직할시 북구 유동 107 - 5번지 YWCA 6층 V
5.18 광주민중항쟁연맹 (전화 527 - 0518)

성명 : 상임의장 : 정동년

소개의원 : 장기욱

정상용

이길재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주소 : 광주직할시 북구 유동 107 - 5번지 YWCA 6층
	성명 :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건명	「特別檢事の任命等に關한法律」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1995년 7월 22일
<p style="text-align: center;">소개의견</p> <p>1. 검찰은 지난 7월 18일 이른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며 한국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긴 이 중대한 사건이 실정법의 차원에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p> <p>2. 5.18광주문제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5공비리 사건 등 수많은 대형부정과 부패사건, 권력의 남용과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 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인 없었음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3. 이러한 현실속에서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수 여러차례 재야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온 특별검사제를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이번 5.18 고소고발 사건의 결과를 놓고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p> <p>4.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p> <p>5. 그리고 이 법률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로 입법되어 이 땅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p>	

소개의원 : 장기욱
정상용
이길재





청 원 서

청원제목 :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첨 부 : 법률안 1부
법안성안에 참여한 위원

1995년 7월 25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796-8364, 팩스:793-4745, 전자통신(하이텔/천리안):SOPA21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7 - 5번지 YWCA 6층
(전화 062 - 527 - 05618)

特別檢事の 任命等に 關한 法律(案)

1. 法案의 提案趣旨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공익의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나아가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노릇을 한다. 검찰권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행사없이는 한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파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파탄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올바르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잃어 왔다. 수많은 대형부정과 부패사건, 권력의 남용과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합승희변호사의 폭로는 바로 우리 검찰이 다르다고 있는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지고보면 원래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어서 정치권력이 검찰은 자신의 수중에 두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러한 검찰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방안이나 정상적인 조직 외에 특별검사제를 설치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왔다. 여러나라에서 아예 검찰총장, 검사장등을 선거하거나 검찰권의 행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참심제(독일등 대부분의 유럽 및 사회주의국가) 또는 배심제(영국, 미국)를 도입하거나 검찰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검찰심사회제도(일본)등을 발전시켜 왔다. 통상의 검찰이 담당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따로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나라(미국)도 있다.

이번 5.18광주문제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천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땅의 헌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포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추상같아야 할 검찰권을 내던진 것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완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지금의 검찰 손 안에 남겨둘 수가 없다.

더구나 과거 이른바 '5공청산'과 관련하여 1988년 제144회 국회 당시 이미 야당에서 당시 6공화국의 미진한 수사 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조승형의원외70인 발의)을 제출하여 심의한 바 있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력형 부정비리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

이와같이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수차례 재야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온 특별검사제 논의를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에서는 ‘特別檢事の任命等に 관한 法律’案을 기초하고 국회에 그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여야를 떠나 박차를 가하여 이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랄 뿐이다.

2. 法案의 主要骨子

가.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먼저 해당사건에 관하여 수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소, 공소의 유지, 법령적용의 청구까지 포함함으로써 한 사건을 완결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함(법안 제2조)

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대상을 통상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특히 퇴직후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교체된 다음에라도 제대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동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이경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면책성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특별검사 임명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법안 제3조)

다. 특별검사 임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회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 중 정치권력의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어 청구해 온 때 및 일반 국민 5만명 이상이 연서로써 청구해 온 때를 예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어 조직적인 권력비리를 파헤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법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관련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소추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따로이 재판할 수가 없으므로 재판중인 사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검찰이 추가수사 및 기소를 해 오지 않는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청구하도록 함. 특히 일반 국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시민 소추가 가능한 길을 열게 됨.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 임명 청구가 남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남용이 명백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예거함(법안 제5조)

라. 특별검사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유자격자에 한정하였는바(법안 제6조) 이것은 수사기술등을 고려한 것임.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초당파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을 배제하였음(법안 제7조)

마. 임명절차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한 것임(법안 제8조). 이것은 특별검사의 중립성이 생명인 바 국가기관 보다는 재야법조의 공식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려 함. 특히 종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의 임명과정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음.

바.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상의 지휘 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주고 그 외에는 일체의 외부적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안 제9조 내지 11조). 특히 특별검사가 새로운 부분 또는 대상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전횡을 방지함.

사.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 보조자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들을 지휘 감독하고 교체를 요구하며 나아가 직접 보조자를 채용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임명할 권리를 보장함(법안 제13조). 나아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면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등의 협력요청할 권리를 부여함(법안 제14조)

아.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보게 함으로써 특별검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법안 제17조). 특별검사를 특정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

하고 그 외에는 엄격히 신분보장을 함(법안 제18 내지 19조)

자.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의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의 유효성을 보장하고(법안 제21조) 한편 특별검사 임명청구과정에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함(법안 제22조)

차. 이 법의 시행은 공포시로부터 하면서도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검사 임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법안 제23조) 5.18광주사건의 경우 이 법만 빨리 통과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 한편 해외도피중인 경우 그 시효진행을 정지시키고 재직중인 기간 동안 대통령 뿐만 아니라 본법의 적용 대상 공무원등에게도 공소시효진행정지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처벌을 막으려 시도함(법안제 24조)

3.法案의 全文

特別檢事の 任命等に 관한 法律(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별검사와 그 보조자의 임명, 직무범위, 신분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직무) 특별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해당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확보

제2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본법 적용의 대상)①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에 관련하여 임명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2.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 부의 장관 및 차관
3.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4.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법관, 검사
6.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7. 전 1호 내지 6호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② 전①항 1호의 경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재직기간동안 대통령은 소추당하지는 아니하나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③ 전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당해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특별검사 임명하는 경우)① 특별검사는 제3조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명된다.

1.국회가 스스로 통상의 검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
2.재판 중 발견한 중대한 범죄를 당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장을 통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촉구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국회에 통보해 온 때

3.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국민 5만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연서로써 국회에 청구해 온 때

② 전항의 1호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발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2호에서 법원장은 당해 재판부의 수사촉구 건의를 묵살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이 수사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수사착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에 수사촉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3호에서 다수의 청구인 가운데 5인 이내의 연락받을 대표자를 지명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검사 임명의 거부) ① 제4조의 제①항의 각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제3조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때

2.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범죄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 때

3.특별검사의 임명 요청이 그 대상에 관한 범죄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임에 비하여 오로지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인 것임이 명백한 때

② 전항의 거부는 제8조 ⑥항의 결의 정족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거부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특별검사의 임명자격) 특별검사는 10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7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회의원이었거나 정당원이었던 자
5. 당해 사건 또는 관련사건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관여하였던 자

제8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위 제4조 제①항의 각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검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를 5인 이내에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1명을 선출 하며 이 경우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한다.

⑤ 특별검사의 선출은 국회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로 한다

⑥ 전⑤항의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의 결의로 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제9조(특별검사의 책임) 특별검사는 국회의 법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수사와 처분의 경과에 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한 해임등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검사에 대한 감독) ①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특별검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가 행한다.

③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②항에 따른 감독을 할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1조(특별검사의 직무제한과 확장)①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검사의 성명

2.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개요

3.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대상

②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회가 당초 담당하도록 결의한 내용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수사·기소의 대상을 추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 ②항의 동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2조(사무실) 특별검사가 직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둔다.

제13조(보조자 파견요청등)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를 요청해 올 경우 그 요구에 따라 그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간 동안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이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보조하는 자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기관의 협조의무)①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문서송부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국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검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절차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수사) 제2장(공소)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목적과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제17조(공무원신분) ① 특별검사는 국회의 선출 결의후 국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선서한 때로부터 국회의 해임 결의가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령에 의하여 공무로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18조(해임) 특별검사가 헌법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20조(보수등) ① 특별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 및 그 보조자의 출장에 관한 여비, 숙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별 칙

제21조(특별검사의 수사방해죄등) ①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방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가 무단히 사건 수사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위법한 특별검사임명청구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4조 제1항 2호에서 법원장이 당해 재판부가 요청해 온 수사촉구를 검찰총장에게 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검사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때

② 제4조 제1항 3호에서 일정한 범죄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서명을 위조한 때

제6장 공소시효등

제23조(공소시효완성되지 않은 사건) 이 법의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소시효의 정지등)① 본법 제3조의 자가 그 재직 이전 또는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본법 제3조에 규정한 직위를 순차로 역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본법의 적용대상인 자가 본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청구가 있거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조사 중인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동안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25조(본법의 효력발생시기) 본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